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89호, 2026. 5. 12. 시행)됨에 따라, 범죄경력조회 대상 체육단체 범위, 위탁 업무 범위,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의 범위, 요청 절차 및 방법(제42조 신설)

1) 대상 체육단체 임원의 범위(제42조제1항)

-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1)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, 2)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, 3) 시·도체육회, 4) 시·군·구체육회 및 5)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로 정함.

2) 결격사유 조회 업무위탁(제42조제2항 및 제3항)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단체 임원의

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1) 대한체육회, 2) 대한장애인체육회, 3) 시·도체육회 및 4) 시·군·구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-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,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, 시·도체육회는 해당 시·도체육회 임원, 시·군·구체육회는 해당 시·군·구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3) 범죄경력 조회요청 절차 및 방법(제42조제4항 및 제5항)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(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)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-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신하도록 함.

나.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(제44조의3제2항 개정)

- 1)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 및 제44조의3제2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(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) ① 법 제34조의2제1항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
2.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
3. 시·도체육회
4. 시·군·구체육회
5.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대한체육회
2. 대한장애인체육회

3. 시·도체육회

4. 시·군·구체육회

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위탁받은 체육단체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한체육회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의 임원

가. 대한체육회 임원

나.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

2. 대한장애인체육회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의 임원

가.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

나.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

3. 시·도체육회 : 해당 시·도체육회 임원

4. 시·군·구체육회 : 해당 시·군·구체육회 임원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제1항 각 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신해야 한다.

제44조의3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 ① (생 략)

② (현행과 동일)

1. ~ 3. (현행과 동일)

4.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제42조(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)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1.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2.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3. 시·도체육회 4. 시·군·구체육회 5.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대한체육회

2. 대한장애인체육회

3. 시·도체육회

4. 시·군·구체육회

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위탁받은 체육단체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한체육회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의 임원

가. 대한체육회 임원

나.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

2. 대한장애인체육회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의 임원

가.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

나.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

경기단체의 임원

3. 시·도체육회 : 해당 시·도체육회 임원

4. 시·군·구체육회 : 해당 시·군·구체육회 임원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제1항 각 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신해야 한다.

제44조의3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

제44조의3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

리) ① (생 략)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(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< 신 설 > ③ ~ ⑤ (생 략)	리) ① (생 략) ② (현행과 동일) 1. ~ 3. (생 략) 4.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③ ~ ⑤ (현행과 동일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44